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7호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군산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군산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군산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명 당시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8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엘리베이터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쓰러짐, 폭행, 음성인식 등)이 적용된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생략)</p> <p>② 공동주택 단지 내 지원시설은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의무가 종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7. (생략)</p> <p>③·④ (생략)</p>	<p>제8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엘리베이터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쓰러짐, 폭행, 음성인식 등)이 적용된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9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이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군산시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군산시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4. 부부를 포함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
- 5.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은 공고 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 서류 등
- 2. 서약서 및 동의서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 2.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 확인
- 3. 구비서류
-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인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

(서명 또는 인)

신청내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관계임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 20)	(서명 또는 인)
2. 주택소유 여부	(매입자금)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전세자금)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은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대계약사항	본인(또는 배우자)은 임대인과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님을 확인함	(서명 또는 인)
5.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자료(주거자금에 한함), 소득상황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밖의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등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0호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적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3. “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RE100 산업”이란 RE100 참여자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이용·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RE100 산업 발전 방안
4. 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능형 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 4.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시설의 건립 및 운영
- 5.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 6. 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7. 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 8. 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2.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 4.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구매)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RE100 참여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1호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수립·추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위 향상 지원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권익 보호)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육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에 권고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2호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인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고 운송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상교통 지원 횟수나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비용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손실보전금을 수령·사용한 경우
- 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3호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
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
아교육법」 제2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38조”를 “「초·중등교육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를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교통안전
법」 제18조”를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 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을 어린이 등·하교 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제8조의2에 대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제가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구간별·시간대별로 제한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 ----- -----.</p> <p>2.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 -----.</p>

3.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
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
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
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
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4. (생략)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
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
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3. -----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
2호-----

나. 「초·중등교육법」 제3
8조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
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
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
다)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
은 「교통안전법」 제17조-----

-----.

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군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생 략)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② (생 략)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② -----
----- 의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을 어린이 등·하교 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제8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신 설>

(생 략)

해야 한다.

제8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제8조의2에 대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제가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구간별·시간대별로 제한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4호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이 국민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2. “부적합 결정자”란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에 대한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재안내”란 부적합 결정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기준 변경, 소득·재산 변동 가능성 등 사유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알리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재안내 이력, 안내 방법, 결과, 재신청 결정률 등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기 재안내의 실시)** ① 시장은 전년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기 재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 기준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
 2.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3. 복지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기 재안내는 문서, 문자메시지, 전화, 방문,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도달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우선 활용한다.

제5조(연중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제도 변경 및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및 기록 관리)** 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안내 현황, 재신청 결과, 자격 변동 여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료를 분석하여 정책개선, 취약계층 발굴, 복

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타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한 재안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취지와 절차, 복지 급여 신청 절차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복지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른 재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는 기존 부적합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5호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발굴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자립적 수행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7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상자 관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중복 신고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9조제1항의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4조(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6호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나. 군산시의회
 - 다.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및 종이 사용 줄이기 관리 방안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7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조치”를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를 “세척등 조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을 “세척등 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를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세척등 조치”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관 검사 결과에 의해 세척등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및 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⑥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수질관리) 시장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u>수도법</u>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도시설에 대하여 소독, 청소,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53조(수질관리) ----- ----- ----- 「수도법」----- ----- ----- ----- -----</p>
<p>제5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략)</p> <p>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u>조치</u>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u>세척·갱생 또는 교체</u>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 따라 급수설비의 <u>세척·갱생 또는 교체</u>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u></p>	<p>제5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조치</u>(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 <u>세척등 조치</u>에 ----- -----</p> <p>③ ----- <u>세척등 조치</u>----- -----</p> <p>1. (현행과 같음)</p> <p>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p>

표 제7호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2. (생략)

<신설>

④ ----- 세척등 조치-----

-----.

1.·2.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반검사의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관 검사 결과에 의해 세척등 조치를 해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 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 호스텔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및 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⑥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8호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p> <p>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p> <p>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 나. (생략)</p> <p>다. <u>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u></p>	<p>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p> <p>-----</p> <p>-----</p> <p>-----</p> <p>-----</p> <p>-----</p> <p>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u>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u></p> <p>2. -----</p> <p>-----</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삭제></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29호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 또는”을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으로, “이를 소집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17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 ----- <u>법</u> <u>위 안</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u>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u> <u>“위원회”라 한다.)</u>를 <u>둔다</u>.</p> <p>② <u>삭 제</u></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p> <p>1. ~ 6. (생 략)</p> <p>7. <u>시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u> <u>사항</u></p> <p>8. (생 략)</p> <p>④·⑤ (생 략)</p>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 --- <u>둘 수 있다</u>.</p> <p>③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8.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 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제10조(구성 등) ① -----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u> <u>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u> <u>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생 략)</p> <p>2. 삭 제</p> <p>2. (생 략)</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p> <p>⑤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⑥ (생 략)</p> <p><u><신 설></u></p> <p>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u>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u></p> <p>② (생 략)</p> <p>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u>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제12조(회의 운영) ① ----- - <u>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 ----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의 해촉) ----- ----- -----.</p>

현 행	개 정 안
<p>1. (생 략)</p> <p>2. <u>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u> <u><신 설></u></p>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3. <u>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u></p> <p>제17조(수당 등) ----- ----- <u>범위 안</u>----- ----- ----- ----- -----.</p>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90호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

- 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6.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세무조사 유예”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18. “위탁조사” 또는 “위임조사”란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등) ① 시장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중첩(사업장 소재지가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나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조사 또는 위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유망 강소기업
2.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4년간 건당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당해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에 따른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식) ① 시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

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 달성을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제16조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8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

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장소)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28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대상자
-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별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1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군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귀 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류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현장)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현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군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군 산 시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군 산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91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국내·외 일반인관광객을 시로 유치하여 당일 관광상품을 운영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여행사의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해당될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4. 관광객 유치 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경우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2조제1항의 숙박 관광객에 해당하는 지

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의한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숙박관광객 지원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지원기준 인 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별표 2]

당일 관광객 지원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지원기준 인 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별지 제1호서식)

(여행사명)

수 신 :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제 목 :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FAX		

관광객 유치계획

관광유형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요 방문지	인솔자	
		내국인	외국인		성명	연락처

- 숙박 예정 업소명 :
- 음식점 이용 예정 업소명 :

국제선교통편 이용계획

관광객 국적	인원	입 국			출 국		
		출발일 (출발장소)	입국일 (입국장소)	교통편 명칭	예정일	출국장소	교통편 명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관광여행 일정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관광여행 일정표(예시)

구분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시간			
당일						
1 박 2 일	첫 째 날					
	둘 째 날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FAX			
□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유형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방문유치	인솔자		연락처
		내국인	외국인		성명		
□ 국제선교통편 이용실적(외국인관광객 유치시 작성)							
관광객	인원	입국			출국		
		(출발장소)	(입국장소)	공동평	예정일	출국장소	공동평
□ 보상금 신청내역							
지급신청액	일금	원(₩ 원)					
산출내역				원 ×	명 ×	박	
				원 ×	명 ×	박	
<p>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인) 대표자 :</p> <p>군산시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호의2서식) 1부. 2.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제2호의3서식) 및 관광지 방문 사진첩 1부. 3. 여행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1부. 4.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2호의4서식) 1부. (숙박관광에 한함) 5.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호의5서식) 1부. (수학여행단 유치에 한함) 6.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의6서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7.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8. 승선(탑승)확인서 1부. (국제선교통편 이용에 한함) 9. 통장 사본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FAX		
인솔자	직책 :	성명 :	휴대폰 :

숙박내역

숙박일자	이 객 실 용 수	숙박인원			여행사 관계자	비고
		관광객				
		합계	내국인	외국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숙박업소대표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연락처 :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숙박비 지급 영수증(신용·현금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	--

(별지 제2호의5서식)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FAX		
인솔자	직책 :	성명 :	휴대폰 :

수학여행단 유치 내역

학교명	학년	여행기간	수학여행인원			군산지역 방문지	군산지역 숙박업소
			합계	학생	교사		
			명	명	명		

위와 같이 본사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학교장 귀하

상기 업체가 위와 같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학교명 :

소재지 :

학교장 : (직인)

연락처 :

군산시장 귀하

공지사항 수학여행단체별로 각 1건씩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의6서식)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FAX	
인솔자	직책 :	성명 :	휴대폰 :

음식점 이용 내역

이용일자	식사형태	식 사 인 원			여행사 관계자	비고
		관 광 객				
		합계	내국인	외국인		
	조·중·석식	명	명	명	명	
	조·중·석식	명	명	명	명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식사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음식점 대표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식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소 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연락처 :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음식료 지급 영수증(신용·현금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신청인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FAX	

관광상품 개발 계획

관광상품명	관광기간	관광코스	군산 체류일정	
			체류기간	방문지역
			박 일	
모객국가	모객인원	홍보 계획		
		홍보지역	홍보매체	홍보기간
	명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신청서

□ 신청인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FAX		

□ 신청내역

관광상품명			
관광코스			
홍보내용	광고 일자 :		
	홍보 매체 :		
	광고 크기(시간) :		
총비용	원	신청금액	원
사업기간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처물 1부.
3. 통장사본 1부

군산시 고시 제2026-13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3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7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2.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662-10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경암5길 39-3 (경암동)	20260127	건물신축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218-1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회현면 회현 금광길 13	20260127	건물신축	20070528	금광리 금광마을소재	
3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209-1 (구암동)	-	20260120	건물 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211 (구암동)	-	20260120	건물 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동 323-14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구암3.1로 209-1 (구암동)	2026012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738-2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옥구읍 남척 동길 21	20260121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998-4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옥구읍 광야2 길 73-11	20260120	건물신축	20070528	어은리 광야 마을 소재	

8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564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회현면 서기 길 3-43	20260120	건물신축	20070528	대정리 서기 마을	
9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7-70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미장서로 122 (수송동)	20260119	건물신축	20100125	미장동의 서쪽도로	

군산시 고시 제2026-19호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으로 결정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	유수지	유수시설	군산시 구암동 8-3 일원	-	증) 8,673	8,673	금회	
신설	16	유수지	저류시설	군산시 구암동 60 일원	-	증) 7,009	7,009	금회	

2)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5	유수지 (유수시설)	· 유수지(유수시설) 신설 - 위치 : 구암동 8-3 일원 - 면적 : 8,673㎡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유수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16	유수지 (저류시설)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위치 : 구암동 60 일원 - 면적 : 7,009㎡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나.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96	6~8	국지 도로	388	구암동 316-71 대로3-6	구암동 63-46 소로3-289	일반 도로	-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2	296	6~8	국지 도로	300	구암동 316-71 대로3-6	구암동 63-44	일반 도로	-	전북고136 ('87.10.22)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	295	8	국지 도로	61	소로2-296	소로2-297	일반 도로	-	전북고136 ('87.10.22)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소로2-296	소로2-296	· 연장(L) : 감) 88m 388m → 300m · 종점 : 구암동 63-46 → 구암동 63-44	·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소로2-296호선) 연장축소
소로2-295	소로2-295	· 도로 폐지	·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소로2-295호선) 폐지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513) 및 도시계획과(☎063-454-3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6-35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5-162호(2025.8.29.)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오식도동 515-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오식도동 515-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사업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신재생에너지관 증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의 면적 : 4,603m²
 - 나. 사업의 내용 : 주1동/지하1층~지상7층, 건축면적 1,495.75m², 연면적 8,367m²
 - (금회) 주1동/지상1층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연면적 121.95m² 증축

대지면적 (㎡)	건축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사업내용
4,603	주1동/ 지하층~지상7층	1,495.75 * 건폐율 32.5%	8,367 * 용적률 166.69%	금회 교육시설(연구소)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대학교총장

나.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 8. 29. ~ 2026. 7. 31.(준공 2026. 1. 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필지			4,603					
1	군산시 오식도동	515-9	대	4,603	4,603	국(교육부)				